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5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9.

발 의 자 : 이광희 · 박해철 · 이훈기
윤건영 · 복기왕 · 김문수
이연희 · 박정현 · 양부남
서미화 · 김우영 · 송재봉
모경종 · 박지원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·도 소방헬기의 통합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청 소속 119항공정비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그러나, 현행법은 항공기의 정비를 수행하거나 정비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항공기 제작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. 하지만 119항공정비실과 같은 국가기관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이므로 상업용 항공기정비업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어 정비조직인증을 받을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. 이로 인해 국가기관이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자체 정비를 수행하더라도 현행법상 무자격자에 의한 정비 행위로 간주되어 수행한 정비행위의 적법성과 감항성 인정을 받을 수

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통합정비체계구축에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국가기관이 보유한 항공기(소방, 경찰 등 국가기관 등 항공기)의 유지보수 및 감항성 확보를 위해, 국가기관이 자체 정비조직을 운영하고자 할 때 현행법상의 상용 등록 요건 및 결격사유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되,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정비조직인증 기준은 동일하게 준수하여 인증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재난대응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97조).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항공기정비업자에게”를 “항공기정비업자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”로 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 및 군용, 경찰용, 세관용 항공기에 대하여 제1항의 정비 등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「항공사업법」 제42조 및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7조(정비조직인증 등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97조(정비조직인증 등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국가기관 등의 항공기 및 군용, 경찰용, 세관용 항공기에 대하여 제1항의 정비 등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「항공사업법」 제42조 및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
<u>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정비등의 범위·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조직인증서와 함께 해당 항공기정비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</u>	<u>③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
<u>③ (생략)</u>	<u>항공기정비업자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-----.</u> <u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u>